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전남동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6. 01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감봉(1명), 경고(4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
-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를 부적정하게 취급하였으며,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.

기업운전자금대출 사후점검 소홀

-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후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.

외부감정평가 전산 의뢰 부적정

- 외부감정평가 의뢰 시 부적정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음.

내부통제 업무 소홀

- 현금보유액 불시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80조의3(대출한도 산출), 제3편 제2조(기업여신 업무취급 원칙),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장구), 제42조의2(운전자금 대출한도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, 제68조(자금 용도 사후점검), 제70조(사후점검 방법)
-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
- 「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」 제16조(현금 검사)